

예 산 총 칙

제 1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 총액 및 일시차입 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9,379,604,304	281,388,129
일반회계	8,314,260,290	249,427,809
특별회계	1,065,344,014	31,960,320
기타특별회계	1,065,344,014	31,960,320
농어촌주택사업	4,409,502	132,285
의료급여기금	631,349,473	18,940,484
동부권	36,043,732	1,081,312
학교용지부담금	7,944,338	238,330
소 방	384,998,249	11,549,947
특정자원분·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	598,720	17,962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 예산”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“해당 없음”으로 한다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“해당 없음”으로 한다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“명시이월사업조서”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“46,835,018천원”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“292,800,000천원”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9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연도 예산(명시이월 포함)으로 간주처리한다.